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77
----------	-------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 김희정 · 김승수 · 박준태
서지영 · 이종배 · 김기현
김태호 · 배준영 · 김도읍
김미애 · 조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공사중단 건축물로 확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

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4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조의4(공사중단 건축물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u></p> <p><u>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p>

제14조(권한의 위임) <신 설>

① (생략)

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3조의4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